

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

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 및 기관별 자체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노력도 평가

공공재정환수관리과 김시준 주무관

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

I

공공재정환수법
개정내용

II

청렴노력도
평가관련
빈발질의

질문은 교육시간 마지막 Q&A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시간 관계상 질문은 추후 유선문의(044-200-7646)도 가능합니다.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Chapter. I

공공재정환수법

개정내용



부정청구 금지 등 안내 의무화 등

☑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 안내

[개정 배경]

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('20. 1. 1.)에도 '21년 기준 957억 원의 부정수급 발생

- 각급 행정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부정청구 금지 등 안내 의무화
※ 지급 중단(제7조), 환수(제8조), 제재부가금(제9조), 가산금(제12조), 명단공표(제16조) 등

☑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

[개정 배경]

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도모

-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, 변호사를 통해 부정청구 등 신고 가능
※ 청탁신고('22. 6. 8.), 부패신고, 행동강령 신고('22. 7. 5.)는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



부정이익 등의 환수 시 이자환수의 합리적 조정 등

☑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

[개정 배경]

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

-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
※ 기초연금법(제19조), 장애인활동법(제35조) 등 ‘잘못 지급된 경우’에는 이자부과 면제

☑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부과 규정이 없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

[개정 배경]

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부과 불과

-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,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
→ 공공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부정수급 근절에 도움



부정이익 등의 환수 시 이자환수의 합리적 조정 등

☑️ 진정한 자진신고가 아닌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를 감면으로 조정

[개정 배경]

행정청이 조사 등의 절차 중 부정수급을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는 진정한 자진신고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제재부가금 감면 규모 축소 필요

- 수사·감사, 점검, 신고 등을 통해 행정청에서 부정청구 혐의를 인지한 후에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전액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규모 축소

<개정 전후 제재부가금 부과 비교표>

구 분	현행	개정안	비교
행정청 인지 전 자진신고	전액 감면	전액 감면	동일
행정청 인지 후 자진신고& 전액 반환	전액 감면	감면 규모 조정	감면 규모 조정
사전 통지 후	전액 부과	전액 부과	동일



부정이익 등의 환수 시 이자환수의 합리적 조정 등

☑️ 구조금 신청 근거 신설

[개정 배경]

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 불가

- 부정청구등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와 그 협조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필요

☑️ 보상금 신청기한 규정

[개정 배경]

현행법상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규정 부재로 인해 장시간 경과 후 사실관계 확인 시 어려움 발생
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6항을 준용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
※ 단,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신청 불가



부정이익 등의 환수 시 이자환수의 합리적 조정 등

☑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 근거마련

[개정 배경]

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있는 경우,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,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
→ 신고가 활성화될수록 공공기관의 수입은 회복되나, 국가 재정의 지출은 증가하는 등 국가와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불균형 심화
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를 준용하여 권익위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구 가능

☑ 허위·과다청구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

[개정 배경]

현행법상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허위·과다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부재
→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부정청구에 대한 경각심 유발

구 분	형벌
허위청구자 및 허위청구를 알면서도 지급한 자	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
과다청구자 및 과다청구를 알면서도 지급한 자	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Chapter.2

청렴노력도 평가

빈발질의



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

☑ Q) 자체점검 실적보고서 서식은 언제 배포 예정인지?

A) 최종 검토 중이며, 6월 중 배포 예정

- 종합청렴도평가 워크숍(4.3., 4.5.) 때 실시계획과 함께 관련 서식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안내드렸으나, 청렴조사평가과에서 일괄 송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

☑ Q) 실시계획이 통보되기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필수포함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데,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A) 실시계획 통보 이전에 점검한 실적에 한해 인정 가능

- 실시계획 통보('23. 4.28., 5.1.) 이전의 점검에 대해서는 실적 인정
※ 단, 보조금·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점검 실적 한정
-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, 실시계획에 따른 소관 공공재정 자체점검 시 실적 인정



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

☑ Q) 감사부서에서 점검한 실적만 실적으로 인정되는지?

A) 아님, 그렇게 안내를 드렸으나 사업부서에서 점검한 실적도 인정 예정

- 유선 문의 시, 감사부서에서 점검한 실적만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으나, 관련 내용이 실시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서에서 점검한 실적도 인정 예정
- ※ 단, 올해 평가 중 미흡사항 발견 시 차년도 평가 간 감사부서 점검 실적만 인정 예정

☑ Q)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, 소관 공공재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, 그 예시는 어떤 것이 있는지?

A) 기관 소관 모든 예산이 해당되며, 대표적인 예시로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있음

- 청렴노력도 평가 대상기관의 경우,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공공재정(법 제2조제4호)에 해당
- ※ 다만, 가급적이면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감사 등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분야 점검 요망



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 ·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

☑ Q)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가 적어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것 아는지?

A)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환수 등 제재처분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,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노력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 기조 달성에 기여 가능

- 취약분야 집중점검(유가보조금, 농업직불금) 결과, 점검 대상 기관 전체에 제재처분 관련 이행권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

☑ Q) 부과 실적 기준일이 '23. 6. 30.인데 해당 기간까지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받아야 하는지?

A) 아님, '23. 6. 30.까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공문을 시행하면 됨

- 환수 및 제재부가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납부기한을 30일 이상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, '23. 6. 30.까지 해당 금액을 완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

감사합니다



국민권익위원회